

2015년 7,9급 관세직, 관세사시험 대비

관세법 문제집

Contents

1. 총칙
2.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가격신고, 가격심사
4. 세율 및 품목분류
5. 부과와 징수
6. 납세담보
7. 납세의무의 소멸
8. 관세법상 환급제도
9.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
10. 납세자권리 및 불복절차
11. 운송수단
12. 보세구역
13. 운송
14. 통관
15.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벌칙 및 조사와 처분
16. 보칙

1. 총칙



01 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세관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④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02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 ②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③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 ④ 보수작업의 결과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⑤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하고 즉시 반출된 물품

03 다음 중 수입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소비, 사용에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외국물품을 소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④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은 수입의 소비, 사용에서 제외한다.

04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분실된 경우
- ② 여행자가 여행자휴대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한 경우
- ③ 승무원이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음료
- ④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05 다음 중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 ③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 ④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⑤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06 다음 중 관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②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인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③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⑤ 위 ④에서 설명한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07 관세법규에 의한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그 내용이 틀리게 기술된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② 관세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③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④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⑤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11 외국무역선(기)와 내항선(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외국무역선은 국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②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기는 외국무역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간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대통령전용기는 외국무역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관세법규상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 ②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③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교부 등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3 ()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을 정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중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세관장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② 관세청장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③ 관세청장 -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④ 세관장 -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1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연장 후 납부기한은 ?

- ①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②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 ③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 ④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15 납세고지서의 효력발생시점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교부할 때는 도달한 때
- ② 우편으로 송달할 때는 발송한 때
- ③ 전자송달 경우에는 입력된 때(또는 저장된 때)
- ④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경과된 때

16 다음 중 관세법상 수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반송된 물품
- ②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
- ④ 외국국적의 선박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에 나용선된 선박에 의하여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에서 채포한 수산물
- 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17 천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취소시 납부기한과 월별납부 승인취소시 납부기한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①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납세고지,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
- ②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납세고지, 10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
- ③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납세고지,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
- ④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납세고지, 10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월별 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관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9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보세구역에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 ②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③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④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20 우리나라 관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관세영역에 관한 규정
 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규정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관한 규정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21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본다.
-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세관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2 관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에 의해 협정국 인근의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면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한다.
- ③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④ 기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⑤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면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23 관세법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②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 ③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4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ㄷ.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ㄹ.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ㅁ. 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
- ㅂ.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
- ㅅ.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
- ㅇ.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물품

- ① ㄱ, ㄷ, ㅁ, ㅂ
- ② ㄱ, ㄹ, ㅅ, ㅇ
- ③ ㄴ, ㄷ, ㄹ, ㅂ
- ④ ㄴ, ㄷ, ㅁ, ㅅ
- ⑤ ㄴ, ㄹ, ㅁ, ㅇ

25 관세법상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계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③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6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적합한 관세법적용 원칙은?

국내의 A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 그 후 C세관으로부터 확정가격신고 이행기간 안내문에 기재된 잠정가격신고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과부족을 정산하였다. 그 후 1건의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세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C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① 과세의 형평과 법해석의 합목적성
- ② 소급과세금지
- ③ 신의성실
- ④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27 수입업자 A가 세액을 과소납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5월1일(금요일)에 수정신고를 한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받고, 직접방문하여 납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월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에 납부함
- ② 5월4일(월요일)에 체신관서에 납부함
- ③ 5월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 ④ 5월4일(월요일)에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28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칠레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② 우리나라 어선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 ③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항선에 적재한 외국물품
- ④ 수입하려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29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된다.
- ③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30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관세법에 따른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 ④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1 관세법의 규정 또는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 ④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 ⑤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32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입판매세
- ② 법인세
- ③ 농어촌개발세
- ④ 지방소비세
- ⑤ 유류세

33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 ①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④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37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 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②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및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③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④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⑤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38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⑤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9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수입신고필증
- ②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③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④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0 종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 부담이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므로 종량세보다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도 그 물품의 단위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하다.
- ③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 ④ 국내시장에서 수입물품의 수량에 대해 가격을 표시한 수입물품의 공급곡선은 종가세 부과로 인해 위로 이동한다. 이러한 수입물품 공급곡선의 상향 이동폭은 수입물품 가격이 높을수록 보다 확대된다.

41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체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전부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중이라도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42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의 법해석과 신의성실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질의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4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받은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 ②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③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④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01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 ②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 ③ 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 ④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02 다음의 정상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물품의 적용법령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체화물품의 매각규정에 의해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의 멸실 또는 폐기된 때
- ③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 ④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기한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수입신고 전 반출을 한 때
- ⑤ 보세공장 외 작업시 작업허가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때

03 다음은 관세법상 일정한 상태에 있는 물품과 이 물품의 과세물건확정시기(법 제16조)를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 - 적발한 때
- ② 보세구역밖에서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추정하는 물품 -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허가를 받을 때
- ③ 입항 전 수입신고 물품 -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는 때
- ④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때
- ⑤ 보세운송기간이 경과된 물품 - 보세운송기간이 경과된 때

04 다음의 납세의무자를 설명한 것 중 옳바른 것은?

- ① 납부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 한하여 수입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② 보세운송 중인 물품이 도난이나 분실되었을 경우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③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해당 물품의 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한 수입물품의 경우 그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05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과세대상 범위의 확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 중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선용품 하역허가를 받았으나 외국무역선의 출항지연으로 이를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때 : 당해 물품이 하역된 때
- ② 전자상거래에 의해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당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
- ③ 제조공정에 긴급투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당해 물품이 반출된 때
- ④ 수입신고를 한 다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를 사용한 때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때
- ⑤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로 인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매로서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06 다음 중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국제우체국에서 분실된 보세가공 수출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인 또는 취급인인 당해 우체국장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② 미국에서 우편으로 수입된 물품의 수취인과 당해 물품의 실제 화주가 다른 경우 당해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③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 보세창고에 장치 중에 판매되어 양도된 때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관세사가 부산에서 서울로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운송중인 물품이 도난 된 경우에는 당해 보세운송신고를 한 관세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하고 당해 물품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07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관세법에서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정한 경우가 있다. 다음 중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 ② 보세운송기간의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 ③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 ④ 민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 ⑤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08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다음 중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수입계약서에 기재된 수하인
-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 ④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수하인

09 수입신고시의 납세의무자와 상관이 없는 자는?

- ① 통관취급법인
- ②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
- ③ 납세보증자
- ④ 보세운송업자
- ⑤ 외교관용 면세물품의 무단양도자

10 다음 ()안에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가 법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법 제19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 ① 시설대여업자 - 대여시설이용자 ② 대여시설이용자 - 시설대여업자
- ③ 화주 - 특별납세의무자 ④ 특별납세의무자 - 화주

11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② 관세법에 규정하는 대행수입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④ 선용품, 기용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을 경우 당해 물품의 운송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⑤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12 인천상사는 실화주로 동해물산에 수입을 위탁하였다.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는 동해 물산이 화주로 표시되어 있다. 동해물산이 반입한 외국물품이 인천세관의 지정장치 장에 장치도중 도난되었다면 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① 인천상사
- ② 동해물산
-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 ④ 절취한 자
- ⑤ 도난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없음

13 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 요청에 의하여 단 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동 물품은 수입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① A사
- ② B사
- ③ D사
- ④ E사 및 F사

14 다음 중 납세의무가 확장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수입신고인의 연대납세의무
- ② 보증인의 납세의무
- ③ 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에 대한 양수인의 납세의무
- ④ 감면물품의 시설대여업자의 납세의무

15 다음은 보세건설장의 과세물건확정시기, 적용법령시점, 과세환율시기를 나열한 것이다. 맞은 것은?

- ①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수량,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일
- ② 수입신고수리시의 성질과 수량,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시
- ③ 보세건설장 반입시의 성질과 수량, 수입신고수리시, 수입신고시
- ④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수량,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수리시
- ⑤ 정답이 없다.

16 과세물건확정시기, 적용법령 법령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추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허가를 받은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이 때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된다.
- ② 보세공장의 장외작업시 작업허가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추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외허가를 받은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이 때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된다.
- ③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송기관, 관세통로로부터 즉시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신고한 때에 확정되고, 이때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된다.
- ④ 외국물품인 선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하역허가를 받은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이 때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된다.
- 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수입신고수리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17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결 중 올바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 양도시 → 양수인
- ② 수입신고전 보세구역 장치물품 양도시 → 양도인

- ③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 양도인 또는 양수인
- ④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경우에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재수출하지 아니한 자
- ⑤ 분할납부 승인물품을 동일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 양수인

18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 수입신고인
- ② 납세보증
- ③ 보세운송신고인
- ④ 외교관 면세물품의 무단 양도자
- ⑤ 여신전문금융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19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결 중 올바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 ③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
- ④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으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하여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

20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회주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회주가 관세의 납세 의무자이다.
- ②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 ③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수입물품의 회주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⑤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1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 D수산(주)의 지평호는 태평양 공해상에서 직접 잡은 참치 300톤과 여기에 미국어선이 인근 공해에서 어획한 참치 200톤은 톤당 1천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총500톤을 한국에서 온 운반선에 인도하였다. 운반선은 부산항에 정상적으로 입항하여 세관에 과세대상 물품 전량을 수입신고 하였다.

- ① 내국물품은 지평호가 직접 잡은 참치 300톤이다.
- ② 외국물품은 미국어선에서 구입한 참치 200톤이다.
- ③ 과세물건의 수량은 운반선이 부산항에 반입한 참치 500톤이다.
- ④ 수입신고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적어도 미화로 200,000달러이상이다.

22 다음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1. 25. 인천소재의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물류센터 내의 보세창고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외국물품인 기계류의 상당량이 소실되었다.

- ① 소실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소실된 때이다.
- ② 소실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된다.
- ③ 소실원인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화재 때문이라면 소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화재로 손상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관세가 경감될 수 있다.
- ⑤ 화재 후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세창고 운영인이다.

23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된 후 적발된 물품은 해당물품이 적발된 때
- ②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 된 때
-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멸실 되거나 폐기된 때
-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 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받은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한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24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수입신고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과세는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 그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이다.
-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이다.

25 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① 계약시점의 법령
- ② 수입신고당시의 법령
- ③ 우리나라 입항시의 법령
- ④ 선화증권발행일의 법령
- ⑤ 선적일의 법령

26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 ② 모든 수출입물품은 관세부과대상으로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④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물품의 성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27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허가된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
-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④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건설장의 작업이 완료된 때
-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32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3. 과세표준 및 가격신고, 가격심사

01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②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 ③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④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 ⑤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0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거래가격 성립요건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특수관계(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를 소유한 경우
- ⑤ 구매자 및 판매자가 각각의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03 제평가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기 위하여 판매되어야 한다.
- ② 구매자가 이를 사용 처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 ③ 구매자가 그 물품을 사용, 처분한 후에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을 판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 ④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 ⑤ 임차하여 수입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04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 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인화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때 그 인하여 지급한 인하 차액
- ②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 ③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교육비
- ④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금액
- ⑤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하자보 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05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거래가격의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②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 당해 물품을 특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 ③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 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06 국내의 컴퓨터 생산자 “갑”은 영국의 유명 상표권자인 “A”사와 “갑”이 생산하는 컴퓨터에 “A”사의 고유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 1,000대를 수원에서 생산하여 컴퓨터 1 대당 미화 1,000달러로 중국에 수출한 다음 그 판매액의 10%에 상당하는 미화 100,000 달러를 권리사용료로 “A”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물건과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물건은 없고 과세가격도 없다.
- ②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0 달러이다.
- ③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100,000 달러이다.
- ④ 과세물건은 없지만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 달러이다.

07 관세법상 가격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0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 ②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④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⑤ 독립적 법적 사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09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②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③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⑤ 위의 ①②③④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10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관청 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중 신고가격 부인의 사유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아노를 교육용 기자재로만 사용하는 조건하에 거래한 경우
- ②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를 외국의 수출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하에 거래한 경우
- ③ 소화장비를 수출자와 특수관계는 없으나 특정업체에게 임대하는 조건하에 거래한 경우
- ④ 첨단 통신장비를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거래한 경우
-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갑의 무역거래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갑이 수입한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미국 A사로부터 의료장비 3세트를 수입하고 FOB조건으로 총 2,000만원 중 선불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였다.(연불이자 포함 금액)
- 연불조건수입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과는 구분하여 10만원의 연불이자를 지급하였다.
- 한국 선박회사 B에게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임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 부산항에 도착한 장비를 서울로 보세운송하고 운송을 담당한 외국계 운송회사에 운송 및 보험료로 50만원을 별도로 지불하였다.
- A사와의 거래를 중개한 국내소재 수입대리점 을에게 수수료로 30만원을 별도로 지불 하였다.
- 미국 A사가 갑이 수입한 의료장비를 제작할 때 동 장비에 장착하도록 갑은 반도체칩 100만원 상당어치를 무료로 송부하였다.
- 수입의료장비의 사용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가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갑은 동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로 5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였다.

- ① 2,220만원
- ② 2,230만원
- ③ 2,240만원
- ④ 2,160만원
- ⑤ 2,060만원

14 관세법규상 수입물품에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또는 보험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한다.
- ②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 ④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15 우리나라 K사가 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지불한 아래의 금액 중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 ① K사 직원의 미국 곡물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출장비(항공료, 체재비 등)
- ② K사 비용과 책임으로 선임한 대리인에 지급한 구매수수료
- ③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약정한 연불조건 수입에 따른 연불이자
- ④ 수입물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불한 수입 후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등 비용
- ⑤ 선적항에서 포장에 소요된 노무비 및 자재비

16 관세법 규정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설명한 내용 중 잘 못된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②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③ 신고한 물품이 원유, 광석, 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국내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17 관세법 제30조의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 ② 수입항까지의 운임
- ③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금액
- ④ 수출자가 당해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출판매할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18 합리적기준에 의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일지라도 국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으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을 때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②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다.
- ③ 동종·동질물품의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은 과세가격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할 때 선적일, 시장조건등의 요건을 신중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
- 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더라도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배제하고 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는 없다.

19 거래가격 성립요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② 수입물품이 전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③ 광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④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
- ⑤ 자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0 관세청장은 특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은?

- 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손상된 물품
- ②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 ③ 입차 수입 물품, 중고물품
- ④ 범칙물품

21 다음은 잠정가격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 잠정가격신고제도란,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 신고 시에는 일단 잠정적인 가격으로 가격신고만 하고, 사후에 확정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 ②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하여 수입 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22 신고한 가격이 합리적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 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 ②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23 다음은 (주)지평이 FOB조건으로 프랑스에서 수입한 물품의 거래내역이다. 이때 관세액을 계산하면 ?

* 인보이스상 가격
 \$10,000(연불이자 \$100, 수입 후 당해물품의 설치비용 \$150 포함되었으며, 구분하여 기재되었음)

* 구매자가 인보이스 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한 내역

1.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 : \$100
2. 구매자가 부담한 포장비용 : \$300
3. 구매자가 부담한 저작권 사용료 : \$700
4. 구매자가 부담한 재현권 사용료 : \$100
5.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 : \$1000
6. 국내도착항까지 운임 : \$1000
7. 국내도착항까지 보험료 : \$50
8. 수입항에서의 하역비용 : \$100

* 적용환율

1.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 : 1000원/\$
2.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 : 1100원/\$
3. 수입신고수리일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 : 1200원/\$

* 당해 물품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세율

1. 기본세율 8%
2. 잠정세율 10%
3. WTO양허세율 5%
4. 한 유럽 FTA 3%

① 384,000원

② 640,000원

③ 645,000원

④ 1,032,000원

⑤ 1,290,000원

24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 ()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①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 ② 관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 ③ 세관장 관세청장
- ④ 관세청장 세관장

25 다음 수입물품(전화기 1000대)에 대한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수입자 I사는 구매대리업체 D사를 통해 수출자 S사로부터 10,000대의 전화기를 대당 US\$400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1차로 전화기 1,000대를 US\$400,000(CIF)에 수입하였다.

가) 수입자인 I사는 전화기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 S사에게 무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한 운송비용 등 기타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였다.

- (1) I사에 의해 수입국에서 US\$20,000에 생산된 디자인 및 설계도
- (2) 개당 US\$10의 비용으로 수입국에서 생산된 10,000개의 액정표시판. 액정표시판은 전화기당 1개씩 사용되며, I사는 수입 수량에 따라 액정표시판의 비용을 할당하여 수입신고하기로 한다.
- (3) 수입국에서 US\$10,000의 비용으로 제작된 전화기 몸체 생산용 몰드. 몰드는 전화기당 1개씩 사용되며, I사는 수입수량에 따라 몰드의 비용을 할당하여 수입신고하기로 했다.

나) I사는 D사에게 거래되는 전화기 1대당 US\$2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① US\$402,000
- ② US\$411,000
- ③ US\$413,000
- ④ US\$530,000
- ⑤ US\$532,000

26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②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 ③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 동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 ④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 ⑤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27 다음 사례에 명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1년간 교환교수로 근무하다가 귀국하게 된 홍길동 교수는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차물품 수입통관에 관련된 관세청 고시를 찾아보았더니,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 신고 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었다.

- ①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원칙(법 제30조)
- ②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법 제31조)
- ③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법 제33조)
- ④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법 제35조)
- ⑤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법 제34조)

30 다음의 중 법30조의 1평가방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가격에 의심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 ②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③ 가산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경우
- ④ 공제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어 공제하지 못한 경우

31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②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③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
- ④ 수출용원재료
- 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2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나. 수입가격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 다. 수입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① 가 ② 나 ③ 가, 다 ④ 나, 다 ⑤ 가, 나, 다

33 국내기업인 A사는 동일의 B사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관세법 30조에 따라 과세가격결정 시 권리사용료의 가산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 ② 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③ A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재포장한 후에 B사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 A사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B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34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할 때, 만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 이 경우 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은?

- ①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②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③ 수입 후에 외국의 수출자가 파견한 기술자의 감독 아래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
- ④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⑤ 연불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35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②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③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
- ④ 수출용원재료
- 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6 관세법상 가격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로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계약서
- ② 송품장
- ③ 수입물품의 사용설명서
- ④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⑤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한 자료

37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 ③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 ④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8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실상의 동업자인 경우
-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9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물품은

- ①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② 수입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물품
- ③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물품
-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나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물품
- ⑤ 해당 물품을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금액으로 환산불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물품

40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②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거나 또는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 ⑤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4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 ①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③ 관세 체납액이 3만원이고 체납기간이 7일된 자가 신고하는 물품
- ④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2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 ②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 ③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 ④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 ⑤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43 안양시에 소재하는 A업체가 미국에 소재하는 B업체로부터 'DAP 안양 US\$ 25,000'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 DAP US\$ 25,000 내역을 검토해보니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은 다음과 같고, 그 세부내역은 무역서류에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었다. 이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 물품가격 : US\$ 20,000
 나. 해상운임 : US\$ 3,000
 다. 부산항에서의 하역료 : US\$ 500
 라. 해상보험료 : US\$ 300
 마. 선적항에서의 검사비용 : US\$ 100
 바. 부산항에서 안양까지의 보세운송료 : US\$ 1,000
 사. 부산항에서 안양까지의 보험료 : US\$ 100

- ① US\$ 23,300
- ② US\$ 23,400
- ③ US\$ 23,900
- ④ US\$ 24,900
- ⑤ US\$ 25,000

4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 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로 정한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산요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 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 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 ④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4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ㄴ.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ㄷ.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ㄹ.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수입물품
- ㅁ.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46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육 등에서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47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격신고의 사항과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에 송품장 등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8 관세법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
- ②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 ③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
- ④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 선율, 영상,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49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
- ②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
- ③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인 경우
- ④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을 초과하여 제작한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 ⑤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0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여기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 제외)
-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③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④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입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⑤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51 관세법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소요되는 운임·보험료와 그밖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결정된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 ②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기초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 ⑤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5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④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53 다음은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제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과세가격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과세가격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